

핵심만 정리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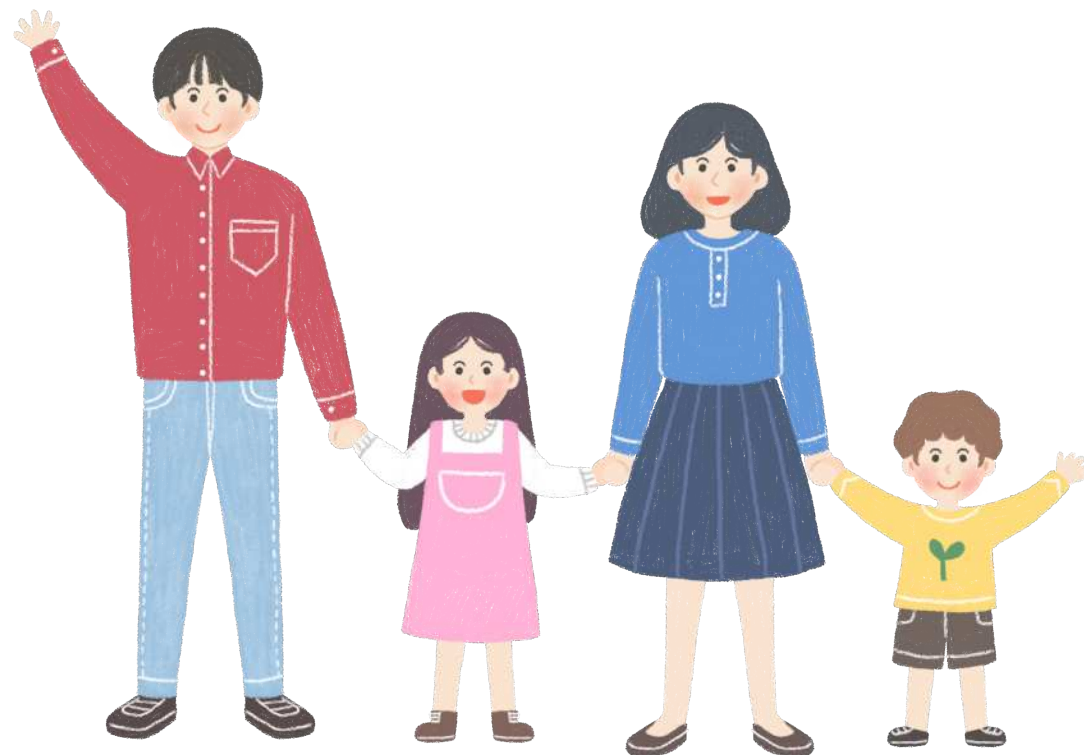
가정위탁

총정리!



가정위탁이란?

친부모의 사정 (사망, 질병, 이혼,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아동을 돌보지 못할 경우, 일정기간동안 위탁가정 안에서
아동의 안전한 보호와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는
아동 복지 서비스



가정위탁의 유형



가정위탁의 유형

일반위탁 (친인척)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조부모 + 민법에 의한 8촌 이내
혈족인 가정에서
보호하고 양육하는 것

일반위탁 (친인척 외)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아동과 혈연관계가 없는 가정에서
보호하고 양육하는 것

일시가정위탁

일시적(기본 3개월, 최대 6개월)으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가정에서
양육하는 것

전문가정위탁

학대피해, 2세 이하, 장애, 경계성지능
장애를 가진 보호아동을
전문적인 자격을 갖춘 위탁가정에서
보호하고 양육하는 것

위탁가정 선정요건

❖ 일반(일시) 가정위탁

- 위탁아동을 양육하기에 적합한 수준의 소득이 있는 가정
- 위탁부모 25세 이상으로 위탁아동과의 나이 차이가 60세 미만
- 자녀의 수가 위탁아동을 포함 4인 이내 (만18세 이상 제외)
- 가정 내 성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 정신질환 등의 전력이 없을 것

❖ 전문가정위탁(1가지 이상 해당)

- 01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른 사회복지사
- 02 「영유아보육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보육교사
- 03 「유아교육법」 제22조, 「초·중등교육법」 제21조에 따른 교사
- 04 「의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
- 05 「청소년기본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상담사
- 06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평생교육법」 제32조 또는 제33조에 따른 전문대학 또는 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학위가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의 심리 관련 학과를 졸업한 자
- 07 그 밖에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준

가정위탁 신청절차

[일반(친인척 외), 전문]

1. 신청

보호필요아동 의뢰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 양육,
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 관할 아동거주지 시군구 또는 읍면동에 신청

위탁보호 희망자

관할 아동거주지 시군구 또는
읍면동에 신청

2. 아동 및 위탁 가정환경 조사

- 읍면동
: 아동, 친부모, 위탁보호 희망자에 대한
조사, 상담
- 시군구
: 위탁부모의뢰

2. 아동 및 위탁 가정환경 조사

- 가정위탁지원센터
: 위탁부모 양성교육, 적격여부 심사,
위탁부모 추천, 연계
- 시군구
: 위탁부모 범죄경력 정보 조회

3. 가정위탁보호 결정, 통보

- 시군구
: 위탁보호 결정 통보

4. 사례관리

- 읍면동, 시군구, 가정위탁지원센터
: 위탁가정과 아동양육 협력

5. 가정위탁보호 종결

- 시군구, 가정위탁지원센터
: 아동 보호조치의 종료

가정위탁 신청절차

[일반(친인척)]

1. 신청

보호필요아동 의뢰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 양육,
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 관할 아동거주지 시군구 또는 읍면동에 신청

위탁보호 희망자

관할 아동거주지 시군구 또는
읍면동에 신청

2. 아동 및 위탁 가정환경 조사

- 읍면동 : 아동, 친부모, 위탁보호 희망자
조사, 상담
- 시군구 : 범죄경력조회
- 가정위탁지원센터 : 양성교육 (5시간)

3. 가정위탁보호 결정, 통보

- 시군구
: 위탁보호 결정 통보

4. 사례관리

- 읍면동, 시군구, 가정위탁지원센터
: 위탁가정과 아동양육 협력

5. 가정위탁보호 종결

- 시군구, 가정위탁지원센터
: 아동 보호조치의 종료

가정위탁 지원서비스



1. 양육보조금 지원 위탁아동 1인당 월 40만 원 (경기도 기준)

2. 생계/의료/교육 급여지원 위탁아동을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책정하여 생계/의료/교육 급여 지원

3. 아동용품구입비 위탁아동 1인당 100만 원 지급 권고 (최초 1회)

**4. 상해보험료 및
심리검사/치료 지원** 위탁아동 후유장해, 입원, 통원 의료비 /
심리검사비/ 치료비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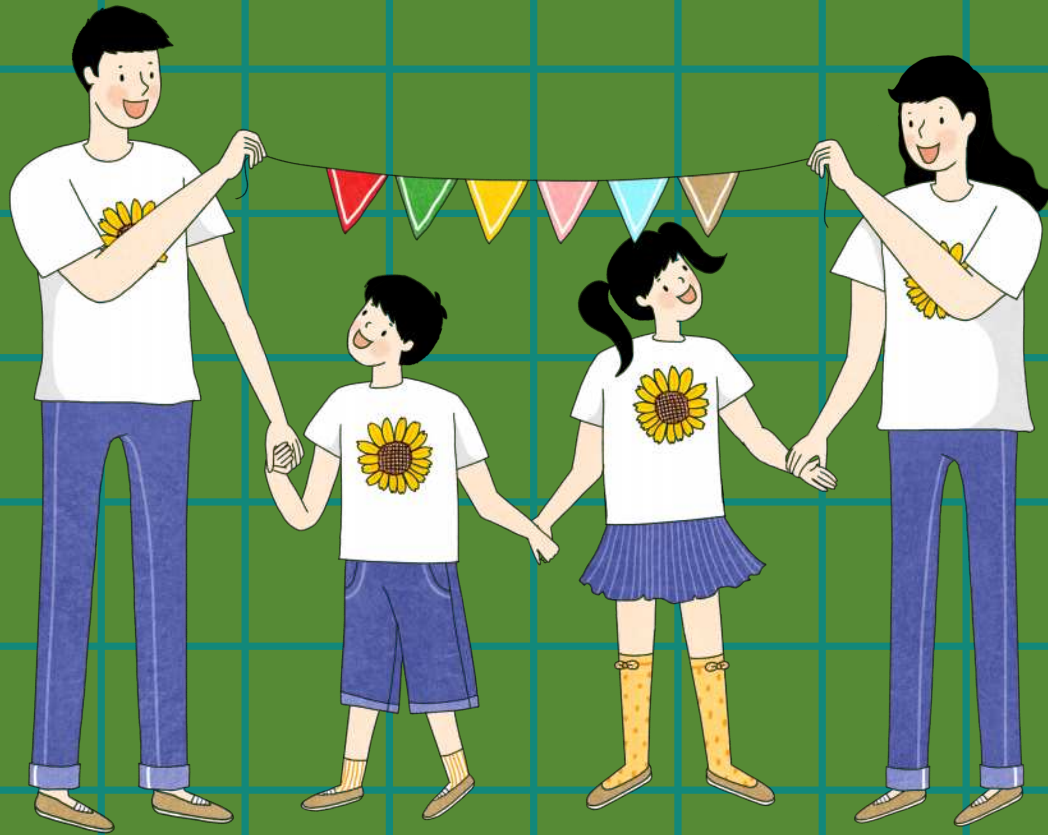
5. 사례관리지원 교육/상담 서비스 제공, 원가정 복귀 지원

6. 자립지원 자립정착금, 대학진학자금, 아동발달지원계좌, 수당 등 지원

7. 위탁가정 전세주택 지원 전세자금 및 공공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가정위탁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031 - 234- 3980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경기남부가정위탁지원센터